



양산사송 트루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큰들로 84 신혼희망타운[사송트루엘]

■ 공급대상 :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792세대 중 잔여 3세대 (전용면적 55㎡ 2세대, 59㎡ 1세대)

LH에서는 풀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31.), 추가 입주자모집공고(2020.05.04., 2020.09.09., 2020.10.19., 2022.08.02.) 이후 발행한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금(일천만원) 및 입주잔금 순으로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잔여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양산시송 트루엘 신혼희망타운 총 1,188세대 중 792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96세대는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31.(수)이고,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이 주택의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금(일천만원) 및 입주 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금회 공급세대는 기존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높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31.)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팝플랫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시공사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송트루엘로 적용되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해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하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종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겸종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겸종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다)] 전월(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이나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 전매제한(기간 도과로 해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이후 무주택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한 세대 내에서 1인이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명단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4년)**

공 고	신청접수	당첨자 추첨·발표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24.07.31.(수)	'24.08.12.(월) 10:00 ~ 17:00	추첨 : '24.08.14.(수) 14:00 발표 : '24.08.14.(수) 17:00이후	'24.08.19.(월) ~ 21.(수) (10:00~17:00)	'24.09.10.(화)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송A-2 샘플하우스

※ 서류접수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종암대로 215)

※ 계약체결 장소 : 양산시송A-2 샘플하우스(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49, 사송에비뉴원 201동 503호)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미감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경과후 도달시 무효 처리).

■ **금회 모집공고일(2024.07.31.)기준 양산시송 A-1블록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무순위 공고이므로 경쟁 발생 시 별도 가점 적용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 및 등호를 결정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쿨센터 1566-9009)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인 총자산가격(362백만원) 이하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http://nhuf.molit.go.kr)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문 의 : HUG(주택도시기금) 쿨센터(1566-9009) ■ 금 리 : 연 1.3% 고정금리(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훈zap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접수는 신청시간 마감(17:00)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고, 청약내용의 수정 및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는 LH청약센터의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등

1. 공급규모

- 양산시송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20층 18개동 792세대 중 3세대(전용면적 60㎡이하)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m ²)					공유 대지 면적(m ²)	금회 공급 세대수		최고층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동면적				계약 면적(계)	당첨자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A-1	합 계								55.3186	3	15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059.7500A	59AH	확장	59.75	23.0969	8.8211	46.1083	137.7763	1	5	20			
	055.8100A	55AH	확장	55.81	21.5739	8.2393	43.0679	128.6911	51.6708	1	5	20		
	055.9600B	55BL	확장	55.96	21.6319	8.2615	43.1836	129.0370	51.8097	1	5	20		

-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해당 물량에 대해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팝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달라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금액(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해당동호	옵션 여부	공급금액			계약금	입주 잔금	용자금(주택도시기금)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합계			
059.7500A	59AH	104-405	발코니 확장, 기본형(침실2/침실3분리+팬트리1/팬트리2분리)	213,360,000	12,336,000	225,696,000	10,000,000	160,696,000	55,000,000
055.8100A	55AH	104-1903	발코니 확장, 공간확장형(침실2/일파룸통합), 기능성룸카펫	201,310,000	10,750,000	212,060,000	10,000,000	147,060,000	55,000,000
055.9600B	55BL	115-1102	발코니 확장, 공간확장형(팬트리2/드레스룸통합), 기능성룸카펫	199,500,000	10,920,000	210,420,000	10,000,000	145,420,000	55,000,000

■ 주택가격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주택가격이 적용됩니다.
- * 상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자금 안내>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해악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초계약자가 선택한 옵션 그대로 승계되어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 용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의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 공급금액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7월 30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7월 30일)보다 빠르므로,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08.14.)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와 그 부모(부모와 그 부모)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은)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우리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등·호 변경은 불가함).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하는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055-210-8400)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II 신청 시 확인사항(전매제한, 중복청약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 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청약자격 확인, 주택소유 확인 →
2. 주택소유 확인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3. 거주지역 확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전매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최초 공고문을 기준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1.14.)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 처리됩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4.08.12.(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팜플릿 등으로 등·호배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미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미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4.08.13.(화) 오후8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접수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 LN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4.08.12. 10:00 ~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청약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4년 08월 14일(수) 14: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주택형별 당첨자,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경남지역본부 판매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연락처: 055-210-8400)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초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현장계약체결(당첨자)
'24.08.14.(수) 17: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4.08.19.(월) ~ 08.21.(수) 10:00~17:00 LH경남지역본부 판매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24.09.10(화) 10:00~16:00 양산사송A-2 샘플하우스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 49, 시송에비뉴원 201동 503호)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당첨 동·호수를 개방(동호개방일정은 추후 안내) 할 예정이오니, 계약체결 이전 현장 및 세대를 방문하여 단지여건 및 주택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경남지역본부 판매팀(055-210-8400)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4.08.19.(월)~08.21.(수))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시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기간 경과 후 도달시 무효처리).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공개되도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본인/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 방문제출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궁금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반드시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궁금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⑩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⑪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p>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계약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현장수납 불가).</p> <p>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p> <p>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p>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p>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긴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td> <td>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td> </tr> <tr> <td>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td> <td>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td> </tr> <tr> <td>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d>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td> </tr> </tbody> </table> <p>*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V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팝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의 계약금(발코니확장금액 포함)]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별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미감재, 주체성능등급 등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9.12.31.)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릿 등을 통해 기타 유의사항,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산사송 A-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609-82-14520)	일성건설(주)(105-81-29640) 서현건설(주)(301-81-27712)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5. 장소 및 연락처 안내

서류제출 장소 및 분양문의	
<p>The map shows the location of the LH Gyeongnam Regional Office (경남지역본부) in Changwon City, Gyeongsangnam-do. The office is located at 215, 1st Floor, Changwon City Central Building, 215, Seo-dong, Changwon-si, Gyeongsangnam-do. The area is marked with a green square and labeled 'LH 경남지역본부'. Surrounding landmarks include Changwon City Hall (창원시청), Changwon City Library (창원시립도서관), Changwon City Cultural Center (창원시립문화회관), Changwon City Sports Complex (창원체육공원), Changwon City Art Center (창원시립미술관), and Changwon City Plaza (창원광장). A legend indicates that the green square represents the LH office location.</p>	<p>■ 서류제출 장소 : LH 경남지역본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판매팀(옹호동)] ※ 사옥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사옥 인근 공영(유료)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p> <p>■ 계약체결 장소 : 양산사송A-2 샘플하우스[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 49, 사송에비뉴원 201동 503호]</p> <p>■ 분양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055-210-8400~1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2024. 07. 31.

